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32861
등록일자	2015.9.8.
결재일자	2015.9.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강경순	조성률	代김인배	代조충현	황치영	09/09 代황치영
협 조	주무관	이수정			
	의회법제팀장	이창하			
	기획예산과장	代김창수			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계획

『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』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하고자 함

##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계획



복지환경국  
사회복지과

### I 개정 근거

-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 제21조, 제21조의 2
- 『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』

### II 개정 이유

- 『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』 제5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III 주요 내용

-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(안 제8조)
-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함 (안 제8조)
-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3.3.8.~2016.3.7.로 만료가 되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

## IV 추진 일정

- 조례개정 방침 : 2015. 9월
- 입법예고 : 2015. 9월
- 조례·규칙심의위원회 : 2015. 10월
- 구의회 조례안 이송 : 2015. 10월
- 조례공포 : 2015. 11월

## V 참고 사항

- 예산조치 : 비예산
- 합 의 : 합의 불필요
- 규제심사 : 관련없음
- 기타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두 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문 대조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b>제8조(위탁운영)</b></p> <p>⑤ 위탁 운영기간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」 제5조에 따라 <b>3년</b>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<b>두 차례</b>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8조(위탁운영)</b>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b>5</b> <b>년</b> ----- ----- ----- <b>한 차례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